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남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7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11.

발의자 : 박남춘 · 김현권 · 조승래

김영호 · 박찬대 · 김정우

유은혜 · 전해철 · 김종훈

최인호 · 설훈 · 이재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된 바 있음.

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“기명날인”해야 하는 사항을 “기명날인하거나 서명”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8제1항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8제1항 중 “기명날인한”을 “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